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4584 판결 [보이스피싱피해로인한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45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소1380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훈희

변론종결 2024. 5. 29.

판결선고 2024. 7. 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소138042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747,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5,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21. 9. 16. 원고의 자녀 C를 사칭하며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내 원고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받고 원격조종으로 원고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 D의 계좌로

1,000원, E의 계좌로 4,640,000원 합계 9,641,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F은 2021. 9. 16. 피고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H'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합계 13,066,456원 상당 가상화폐를 권한 없이 매도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F은 2021. 9. 16. 피고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원고의 I은행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주식회사 J에서 194,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라. 이처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2,901,456원(= 9,641,000원 + 13,066,456원 + 194,000원)에서 원고가 받은 피해환급금 7,741,018원 및 원고가 관련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추심한 745,261원을 뺀 14,415,177원(= 22,901,456원 - 7,741,018원 - 745,261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415,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0원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았음을 이유로 위 금액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0원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았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금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다만 위 5,000,000원 부분은 원고의 계좌에서 E의 계좌 및 K의 계좌로 각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경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5,000,000원 송금에 관한 사정을 포함하여 살펴본다.

2) 위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20. 2. 3.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1) 국내에 거주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동포이다.

(2) 2021. 9. 16. 14:12경 원고의 계좌에 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5:08경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날 17:04경 D의 계좌로 1,000원, 같은 날 17:25경부터 17:32경까지 E의 계좌로 960,000원, 980,000원, 900,000원, 850,000원, 950,000원(E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 4,64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다.

(3) 피고의 계좌로 위 5,000,000원이 송금된 직후인 2021. 9. 16. 15:15경 피고의 계좌에서 F(L,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송금 이전에도 피고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2021. 3. 16. 550,000원, 2021. 4. 24. 1,000,000원, 2021. 7. 13. 1,000,500원, 2021. 8. 15. 1,100,500원, 2021. 8. 16. 1,100,500원이 각각 송금된 적이 있다.

(4) 원고는 2021. 9. 17. 서울관악경찰서에 「성명불상자가 2021. 9. 16. 원고의 자녀를 사칭하며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내 원고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받고 원격조종으로 원고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5) M는 2021. 10. 18. 위 경찰서에서 “위챗2) 으로 알게 된 중국 여자가 ‘내가 일하는 곳 사장님(원고)이 급여를 가불해 준다고 하니 이를 받아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저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고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0원은 중국에 있는 피고의 지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는 다시 위 중국 여자의 지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위 경찰서는 2021. 12. 6.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도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다.

(7) 원고는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으로 2021. 12. 14. 1,000원, 같은 달 22.

2,740,018원(거래내용에 'E'라고 표시되어 있다), 같은 달 23. 5,000,000원(같은 날 F의 계좌에서 피해환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이 출금되었다) 합계 7,741,018원을 지급받았다.

(8) 원고는 2023. 2. 22. 집행력 있는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N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중 청구채권인 8,170,642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3타채452, 이하 '관련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2023. 4. 3. N조합으로부터 그중 일부인 747,261원3) 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 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7, 8,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9,641,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거나,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일관되게 「 피고의 중국 고향 친구 M로부터 2021. 9.경 “위챗으로 알게 된 O라는 여자가 ‘아버지가 아파서 내가 일하는 노래방 사장님(원고)이 급여를 가불해 준다고 하는데 나는 한국 계좌가 없으니 이를 대신 받아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나도 중국에 지인이 없어 외화 송금을 해 본 적이 없으니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받아 중국 환전소에 송금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2021. 9. 16.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되자 시간 여유가 없는 피고는 지인 F을 통해 피고의 계좌에서 M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M가 관련 형사사건 담당 경찰서에서 한 진술 내용, M가 2021. 9. 16.부터 O와 위챗으로 나눈 대화 내용 등이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M에게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M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3) 피고가 2021. 3. 16.부터 2021. 8. 16.까지 5차례에 걸쳐 지인 F에게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송금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4)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피고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고가 그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M가 관련 형사사건 담당 경찰서에서 한 진술 내용, M가 2021. 9. 16.부터 O와 위챗으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M도 ‘O’라는 이름으로 원고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속아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5,000,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5) 피고는 E와 D는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1,000원, E의 계좌로 총 4,640,000원이 송금된 것에 피고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F이나 E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나. 제2, 3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제2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매도한 사람이 피고인지 또는 F인지, 피고 또는 F이 원고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원고의 가상화폐를 매도한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주식회사 G의 가상화폐 거래내역(갑 제7, 14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F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얻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13,066,456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다음으로 제3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지 또는 F인지, 피고 또는 F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일관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I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8호증)만으로는 피고나 F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94,000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관련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2023. 4. 3.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N조합으로부터 747,261원을 추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제1심판결 중 가집행선고는 이 판결 선고로 그 효력을 잃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원고는 2023. 4. 3. 법률상 원인 없이 747,261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747,26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추심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김지영, 판사 김동현

- 1) 다만 피고는 국내에 입국한 시점은 2017. 9. 14.이라고 주장한다.
- 2) 위챗: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이다.
- 3) 원고는 추심한 금액이 745,261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추심신고서(갑 제11호증의 2)에도 745,261원을 추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추심한 금액은 747,261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